

'20년(9차) 수술의 예방적 항생제 사용 평가 세부시행계획

1. 평가 대상

가. 대상 진료기간

- 2020년 7~9월(3개월) 입원 진료분 (2020년 12월 심사결정분까지)
 - 대상 진료기간 동안 입원·수술·퇴원이 이루어진 경우
 - 건강보험·의료급여 (DRG 포함)

나. 대상기관

- 상급종합병원, 종합병원, 병원 (10건 이상 청구한 수술 대상)

다. 대상수술: 18종류*

- 개두술, 견부수술, 고관절치환술, 담낭수술, 대장수술, 슬관절치환술, 유방수술, 자궁적출술, 전립선절제술, 제왕절개술, 척추수술, 폐절제술, 허니아수술, 후두수술, 골절수술, 인공심박동기삽입술, 충수절제술, 혈관수술

2. 평가 방법 등

가. 평가자료

- 요양급여비용 명세서, 조사표

나. 평가방법

- 전수조사, 절대평가
 - 단, 신뢰도점검을 반영하는 '의무기록 일치율' 지표는 표본조사

3. 평가 기준

가. 평가지표

○ 평가지표 4개, 모니터링 지표 2개

영역	지 표
최초 투여시기	(평가지표) ① 피부절개 전 1시간 이내 최초 예방적 항생제 투여율
항생제 선택	(평가지표) ② 권고하는 예방적 항생제 투여율
투여기간 (병원 내 투여+퇴원처방)	(평가지표) ③ 수술 후 24시간 이내 예방적 항생제 투여 종료율 (모니터링지표) ④ 예방적 항생제 평균 투여일수 이내 투여율
기타	(평가지표) ⑤ 의무기록 일치율
	(모니터링지표) ⑥ 수술 후 감염관련 제외율

나. 제외기준

구분	제외기준	제외 영역
수술 전 환자상태	만 18세 미만	전체
	ASA Score Class 4, 5, 6인 경우	
	수술 전 감염 등으로 항생제를 사용한 경우 • 감염을 확인하고 항생제를 투여한 경우 • 항생제가 필요한 환자상태에 대한 진료의 혹은 감염내과 의사의 기록이 있고 항생제를 투여한 경우	
	응급수술 (총수절제술 외) -제왕절개술은 자궁경부 4cm이상 개대 시	
	항생제 알러지가 있는 경우	
입원 중 시행 수술	동일 입원기간 내에 2회 이상 수술을 시행한 경우 • 평가대상 수술을 2회 이상 시행한 경우 • 평가대상 수술과 다른 시점에 기본마취를 1건 이상 시행한 경우	전체
	평가대상 수술과 동시에 다른 수술을 시행한 경우 • 2종류 이상의 평가대상 수술을 시행한 경우 • 2개 이상의 진료과에서 각각 다른 장기에 대한 수술을 시행한 경우 • 평가대상 수술이 제2의 수술인 경우	
수술 후 환자상태	수술 후 24시간 이내에 혈액을 4 pint 이상 수혈한 환자	항생제 선택 및 투여기간
	수술 후 감염 등으로 항생제를 사용한 경우 • 수술부위 감염 • 수술 후 수술부위 외 감염 - 수술 후 감염을 확인한 경우 - 항생제가 필요한 환자상태에 대한 진료의 혹은 감염내과 의사의 기록이 있는 경우	

4. 종합결과 산출

가. 종합점수

- 산출방법
 - 4개 평가지표에 가중치를 부여하여 종합화
 - 수술별·기관별 종합점수를 각각 산출
- 산출식: $\sum\{(지표별\ 분자\ 합 / 지표별\ 분모\ 합) \times 지표별\ 가중치\}$
- 평가지표 및 지표별 가중치

구분	영역	지 표 명	가중치
평가 지표	최초 투여시기	피부절개 전 1시간 이내 최초 예방적 항생제 투여율	38
	항생제 선택	권고하는 예방적 항생제 투여율	30
	투여기간	수술 후 24시간 이내 예방적 항생제 투여 종료율	30
	기타	의무기록 일치율	2

나. 등급

- 수술별·기관별 종합점수에 따라 5개 등급으로 분류
- 등급별 종합점수 구간은 결과분석 후 설정

5. 결과 공개

가. 공개대상

- 평가 대상기관 전체 공개

나. 공개범위

- 기관별·수술별 등급
- 수술별 지표별 점수 (모니터링 지표 제외)

다. 공개방법

- 기관별·수술별 1~5등급 또는 등급제외로 공개

6. 가감지급

가. 가감지급 적용대상

- 기존 평가대상 수술(14종류)
 ※ 신규 4종류 수술은 개선기간 부여를 위하여 다음 차수부터 적용

나. 가감지급 기준

- (가감지급 단위) 평가대상 수술별 가감지급
- (가감기준선) 결과분석 후 설정
 ※ 질향상 가산은 10차 평가 시 검토 적용

- [가감지급 제외대상] (「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 및 요양급여비용의 가감지급 기준」 제13조)
- 휴업, 폐업, 종별변경, 법 제98조에 따른 업무정지 및 그 밖의 사유로 전년도 진료기간이 6월 미만인 경우
 - 처음 개설한 요양기관으로서 전년도 진료기간이 12월 미만인 경우
 - 그 밖에 가감지급 대상에서 제외할 만한 충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(‘수술 후 감염 관련 제외율’ 이 40% 이상인 수술은 가산 제외)

다. 가감지급액 산출식

- $\sum \text{수술별} \left\{ \left(\frac{\text{평균 수술료} + \text{평균 항생제 금액}}{\text{평균 수술료}} \right) \times \text{평균 보험자부담률} \times 5\%(\text{가감률}) \times \text{평가대상건수} \right\}$

7. 향후 추진계획

- ('20년 3월) 평가 세부시행계획 변경 공지
- ('21년 3월~) 조사표 수집 예정